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 2007.3.1.],[개정 2008.3.1.],[개정 2008.9.1.],[개정 2009.9.1.],[개정 2011.9.1.],[개정 2012.3.1.],[개정 2013.3.1.],[개정 2013.9.1.],[개정 2014.3.1.],[개정 2014.9.1.],[개정 2015.9.1.],[개정 2016.3.1.],[개정 2016.9.1.],[개정 2017.9.1.],[개정 2018.3.1.],[개정 2019.3.1.],[개정 2019.9.1.],[개정 2020.3.1.],[개정 2020.9.1.],[개정 2021.3.1.],[개정 2021.9.1.],[개정 2022.9.1.],[개정 2022.12.1.],[개정 2023.3.1.]

제1조(목적) 본 대학교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어 능력의 배양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외국어 시험 합격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여 졸업 전까지 필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자 한다.

제2조(시행근거) 학칙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으로 졸업자격 영어시험(이하 “영어시험” 이라 함)을 시행한다.

제3조(응시시기) ① 영어시험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성적사정전까지 <별표 1>의 합격 기준점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의 합격기준점수에만 합격하면 된다.<개정 2008.3.1., 2009.9.1., 2013.3.1., 2015.9.1.>

②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성적사정 2학기 전까지 영어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재학생과 수료자는 <별표6>의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2.3.1., 2013.3.1., 2015.9.1.>

③ 2001학년도 이후의 의예과 입학생 및 1997학년도 이후의 의학과 편입생은 의학과를 졸업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타학과에 준한다.<개정 2012.3.1.>

④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영어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대체프로그램을 미이수할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된다.<신설 2012.3.1., 개정 2013.3.1.>

제3조의2(학점인정) 삭제 <2019.3.1.>

제4조(시험관리) ① 외국어교육원은 영어시험 및 대체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교무처는 영어시험 합격여부 및 대체프로그램 이수결과를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개정 2007.3.1., 2013.3.1. 2019.9.1, 2023. 3. 1.>

② 졸업자격 영어시험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조(시험관리) 제1항보다 제6조(대체인정) 제1항 내지 제7조(시험면제)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08.3.1.>

제5조(성적사정 및 우등기준) ① 학부(과)장은 영어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취합, 매학기마다 단과대학 성적사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 성적사정회의는 매학기말 사정결과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어시험 합격의 해당학기 성적표상의 표시는 “졸업자격 외국어(영어) 시험 : 합격 / <영문>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Graduation Qualification : Pass” 로 기재한다.

④ 단과대학 성적사정회의에서 영어시험 성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학기 성적표상의 “졸업자격 외국어(영어)시험 : 합격(우등) / <영문>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Graduation Qualification : Pass(Excellent)” 로 기재한다.<개정 2009.9.1., 2014.3.1.>

⑤ 영어시험성적의 탁월기준은 800점으로 한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는 탁월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

제6조(대체인정) ① 외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서 별표 1 내지 별표 4에 해당하는 합격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합격 또는 합격(우등)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성적은 성적증명서상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개정 2007.3.1., 2016.3.1.>

1. 토익(TOEIC)
 2. 토플(TOEFL)
 3. 텡스(TEPS) <신설 2008.9.1., 2011.9.1.>
 4.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신설 2008.9.1., 개정 2011.9.1.>
 5. 오픽(OPic) <신설 2008.9.1., 개정 2011.9.1.>
 6. 아이엘츠(IELTS) <본호신설 2011.9.1.>
 7. 한어수평고시(HSK) <본호신설 2011.9.1.>
 8.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본호신설 2011.9.1.>
- ② 제1항 각호의 시험 외 새로운 방식의 시험의 경우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3.1., 2008.3.1., 2014.3.1.>
- ③ 삭제 <2008.3.1.>
- ④ 제1항 2호와 5호의 환산합격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공고한 점수로 한다.
1. 토플(TOEFL) - ETS(미국교육기관)
 2. 텡스(TEPS) - 서울대학교 텡스 관리위원회
- ⑤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시험은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1.9.1.>
- ⑥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한 외국인학부생의 졸업자격시험은 한국어능력 시험(TOPIK)으로 대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본교 자체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3.1., 개정 2021.9.1., 2022.9.1.>

제7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 편입생(외국인은 제외) <개정 2021.9.1.>
2. 시험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3. 삭제 <2021.9.1.>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 <개정 2014.3.1.>
5. 체육특기자 <신설 2018.3.1.>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개정 2018.3.1.>
7. 의예과 수료자격 영어시험을 통과한 자 <신설 2019.3.1.>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 기준은 토익(TOEIC) 350점 이상, 토플 (TOEFL) 42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의 의예과 입학생은 의예과 수료 시까지 영어시험을 합격하여야 하고, 의학과를 졸업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재차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01학년도 이후 의학과 편입생의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과대학 학부(과)별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자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음악학과의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의 편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든 편입생은 별표1의 학부(과)별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의용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08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 2008학년도 이후 신입으로 입학하는 경영학부 학생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은 외부공인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성적만 인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약학과 학생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은 외부공인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성적만 인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은 2008학년도 이후 신입 및 편입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조 제2항, 제3조 제4항, 제3조의2, 제6조 제5항 <별표 5>, 제7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 2013년 3월 1일 이후 재적생은 본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
 - 2. 2013년 3월 1일 현재 수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 제1항 <별표1> 개정 경과조치)
 - 1.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 2. 인문사회 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13년 9월 1일 이후 재적 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기준 점수를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 제1항 <별표1> 개정 경과조치)
 - 1. 영어영문학과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인토익, 교내토익 450점 이상으로 적용되며,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공인토익, 교내토익 550점 이상을 적용한다.
 - 2. 다음 학과(부)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제도를 현행 유지한다.
 - 가. 문리과대학 : 응용수학과, 한국학부, 일어일문학과, 역사고고학과, 인문학부, 스포츠웰스케어학과, 음악학과
 - 나.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유아교육과,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 다. 디자인대학 : 디자인학부
 - 라. 공과대학 :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나노융합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제약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마. 의생명공학대학 : 보건안전공학과, 생명과학부, 식품생명과학부, 임상병리학과

3.글로벌경영학부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공인토익 또는 교내 토익 550점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번에 상관없이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부)별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15년 3월 1일자로 소급 시행한다.

④ 제3조 2항은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들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6항 <별표 7> 신설 경과조치) 외국인 학생(학부) 졸업자격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기준 적용은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신입학, 편입학)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제1항 <별표1> 개정 경과조치)

1. 의용공학부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인토익, 교내토익 450점 이상으로 적용되며,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공인토익, 교내토익 600점 이상을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7조 제1항의 제7호는 2019학년도 의예과에 입학한 의학과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경과조치)

1. 경영학부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내토익, 공인토익 500 점으로 적용한다.
2. 2019학년도 이전 국제경상학부 입학생이 경영학부로 소속 변경한 경우 2020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신입생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2021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및 환경공학과는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자(2013학번 이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과대학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는 2023년 2월 졸업자(2017학번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부)별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 <개정 2008.3.1., 2008.9.1., 2011.3.1., 2013.3.1., 2013.9.1., 2015.9.1., 2017.9.1., 2018.3.1, 2019.3.1., 2019.9.1.,2021.3.1,2022.12.1., 2023. 3. 1.〉

학과(부)별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점수

단과대학	학과(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기준점수	단과대학	학과(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기준점수	
의과대학	의학과	750	디자인 대학	디자인학부	-	
간호대학	간호학과	500		실내디자인학과		
문리과 대학	의생명화학과	400		시각디자인학과		
	응용수학과	-		제품디자인학과		
	국제어문학부	450	영상디자인학과			
	중국학부	450	토목도시공학부	-		
	영어영문학과	550	환경공학과	-		
	일어일문학과	-	건축학과	-		
	인문문화융합학부	-	산업경영공학과	-		
	한국학부	-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		
	인문학부	-	기계자동차공학부	400		
	역사고고학과	-	전자공학과	400		
	스포츠헬스케어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400		
	사회체육학과	350	미래에너지공학과	-		
	음악학과	-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		
	사회과학 대학	공공인재학부	-	공과대학	실내건축학과	-
법학과		-	멀티미디어학부		400	
정치외교학과		-	소프트 웨어대학		컴퓨터공학부	-
행정학과		-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400
보건행정학과		400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400	
사회복지학과		400	BNIT 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	
상담심리치료학과		400		나노공학부	400	
소비자·가족학과		400		제약공학과	-	
가족상담복지·소비자학부		400		바이오식품과학부	-	
생활상담복지학부		400		식품생명과학부	-	
신문방송학과		-		헬스케어IT학과	500	
유아교육과		-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	
통계학과		-		보건의료 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450
특수교육과		400			보건안전공학과	-
경영학부(2014학번 이전)		500			의용공학부(2016학번 이전)	450
경영학부(2015학번 이후)		550	의용공학부(2017학번 이후)		600	
국제경상학부		450	의용공학과		450	
경영대학		경영학부	500		임상병리학과	-
AI융합 대학		컴퓨터공학부	-		작업치료학과	450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400		생명과학부	-
BNT융합대학	의생명화학과	400	약학대학	약학과	750	

※ 약학과 학생의 졸업자격영어시험은 외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된다.

〈별표 2〉 삭제

〈2008.9.1.〉

〈별표 3〉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중국어 합격기준 〈신설 2008.3.1., 개정 2009.9.1., 2014.3.1.〉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중국어 합격기준

구 분	시 험	기준 점수
중국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 학과(부) 학생	신 HSK	5급 이상
중국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을 제외한 전체 학부(과) 학생	신 HSK	4급 이상
삭제 〈2016.3.1.〉		

<별표 4>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일본어 합격기준 <신설 2008.3.1.>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일본어 합격기준

구 분	시 험	기준 점수
일본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을 제외한 전체 학부(과) 학생	일본어능력시험(JPT)	5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
일본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 학과(부) 학생	일본어능력시험(JPT)	7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이상

〈별표 5〉 졸업자격 영어시험 대체인정시험 기준점수 〈신설 2011.9.1.〉

졸업자격 영어시험 대체인정시험 기준점수

시험구분	기준점수
토픽스피킹(TOEIC SPEAKING)	120 이상
오픽(OPIC)	IL(Intermediate Low) 단계 이상
아이엘츠(IELTS)	5.5 이상

〈별표 6〉 졸업자격 영어시험 대체프로그램 〈신설 2013.3.1.〉

졸업자격 영어시험 대체프로그램

구분	대상	학점인정
대체 프로그램	4학년	학점미인정

<별표 7> 외국인 학생(학부) 졸업자격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기준 <신설 2016.3.1.>

외국인 학생(학부) 졸업자격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기준

구분	시험	기준점수
순수외국인입학생 (신입, 편입)	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